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1,918,160	15,357,545
일반회계	442,385,788	13,271,574
특별회계	69,532,372	2,085,971
공기업특별회계	41,997,124	1,259,9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443,714	643,31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553,410	616,602
기타특별회계	27,535,248	826,0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68,867	59,06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163,175	124,895
주차장특별회계	1,900,527	57,016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19,502,679	585,0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